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61 민사부

판 결

사 건 2020가합576954 저작권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 등
원 고 A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엘에이비파트너스
담당변호사 류민희

피 고 1. 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창조
담당변호사 박오순

2. 주식회사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명규, 최인경

변 론 종 결 2022. 7. 8.
판 결 선 고 2022. 8. 26.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 C 주식회사는,

가. 별지 목록 1 표시 각 사진 및 이미지들을 별지 목록 5 기재 각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하거나 이를 복제, 배포, 전시, 전송하여서는 아니 되고,

나. 별지 목록 2 표시 각 제품설명문안 및 요약문구를 별지 목록 5 기재 각 인터넷 사이트, 피고 C 주식회사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광고, 게재, 방송, 게시, 전송, 배포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재한 위 가항과 나항 기재 자료들을 각 폐기하라.

2. 피고 주식회사 D는,

가. 별지 목록 3 표시 각 사진 및 이미지들을 별지 목록 5 기재 각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하거나 이를 복제, 배포, 전시, 전송하여서는 아니 되고,

나. 별지 목록 4 표시 각 제품설명문안 및 요약문구를 별지 목록 5 기재 각 인터넷 사이트, 피고 주식회사 D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광고, 게재, 방송, 게시, 전송, 배포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재한 위 가항과 나항 기재 자료들을 각 폐기하라.

3.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00,000,000원 및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일본에서 'E', 'F', 'G', 'H' 등의 브랜드(이하 'I 브랜드'라 한다)로 골프클럽을 제조·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와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라 한다)는 골프용품 등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I 브랜드의 골프클럽을 홍보하기 위해 별지 목록 6, 9 중 원고의 제품 이미지 부분의 영상과 같이 골프클럽을 촬영한 사진을 원고의 홈페이지에 게재하였고, 별지 목록 8, 11 중 원고의 설명문안 부분의 기재와 같이 골프클럽 제품의 설명문안을 제작하여 원고의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며, 별지 목록 7, 10 중 원고의 이미지 홍보물과 요약문구 부분의 기재 또는 영상과 같이 골프클럽 제품의 홍보물 이미지와 요약문구를 제작하였다(이하 순서대로 '원고 제품 사진, 원고 제품 설명문안, 원고 제품 홍보물 이미지, 원고 제품 요약문구'라 하고, 이를 통틀어 '원고 제품 사진 등'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12. 31. J 주식회사(이하 'J'라 한다)와 'J가 2017. 1. 1.부터 2026. 12. 31.까지 한국에서 I 브랜드의 골프클럽을 독점판매'하기로 하는 독점판매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 C는 I 브랜드의 골프클럽을 국내에 병행수입하여 판매하면서 자신의 홈페이지 및 별지 목록 5 기재 인터넷 사이트에 별지 목록 1 표시 각 사진 및 이미지, 별지 목록 2 표시 각 제품 설명문안 및 요약문구를 사용하였다.

마. 피고 D는 원고가 판매하는 I 브랜드의 골프클럽을 국내에 병행수입하여 판매하면서 자신의 홈페이지 및 별지 목록 5 기재 인터넷 사이트에 별지 목록 3 표시 각 사진 및 이미지, 별지 목록 4 표시 각 제품 설명문안 및 요약문구를 사용하였다(이하 피고들이 사용한 사진 및 이미지, 제품 설명문안, 요약문구를 순서대로 '피고들 제품 사



진 및 이미지, 피고들 제품 설명문안, 피고들 제품 요약문구'라 하고, 이를 통틀어 '피고들 제품 사진 등'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 22 내지 2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나 제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 제품 사진, 홍보물 이미지, 설명문안, 요약문구는 원고가 독창적으로 제작한 것으로서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에 해당한다. 피고들은 원고의 허락 없이 원고 제품 사진 및 홍보물 이미지와 동일한 피고들 제품 사진 및 이미지를 사용하고, 원고 제품 설명문안 및 요약문구를 번역하여 피고 설명문안 및 요약문구를 사용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원고 제품 사진 등은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에 해당하고 주지성이 인정된다. 피고들은 I 브랜드의 골프클럽을 판매하면서 원고 제품 사진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병행수입제품이라는 표시를 하지 않았다. 피고들의 행위는 원고의 소비자들로 하여금 피고들의 영업을 원고의 정식 한국판매대리점의 영업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므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나목에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3) 원고 제품 사진 등은 원고가 오랜 기간 노력하여 만든 성과물이다. 피고들이 이를 무단으로 사용한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¹⁾에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1) 구 부정경쟁방지법(2021. 12. 7. 법률 제185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카목에서 위 법률개정으로 조항의 위치가 파목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파목이라 한다.



4)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피고들 제품 사진 등의 사용 금지, 폐기, 손해배상을 구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원고 제품 사진과 홍보물 이미지는 광고라는 기능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누가 촬영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하므로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원고 제품 설명문안은 단순히 제품의 기능과 제원을 표시하고 설명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원고 제품 요약문구는 기능을 영어로 표현한 것이므로 그 표현에 창조적 개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원고 제품 사진 등은 소비자로 하여금 원고의 제품임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식별력을 갖추고 있지 않으므로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에 해당하지 않고, 주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들은 판매 사이트에 병행수입 또는 직수입이라고 명시하였으므로 소비자들이 피고들의 영업을 원고의 정식 한국판매대리점의 영업으로 오인·혼동할 가능성이 없다.

3) 원고 제품 사진 등은 원고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 제품 사진 등은 골프클럽 광고물에 사용되는 일반적인 표현방법이므로 공공영역에 해당한다. 피고들이 원고 제품 사진 등을 사용한 행위는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지 않는다.

3. 저작권 침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



며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할 뿐이어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단지 저작물에 그 저작자 나름대로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되어 있고 다른 저작자의 기존의 작품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이면 충분하다(대법원 1995. 11. 14. 선고 94도2238 판결,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다28745 판결 참조). 그러나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 즉 저작물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표현을 담고 있는 것은 창작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4다49180 판결 참조).

나. 원고 사진 등의 저작물성에 관한 판단

1) 원고 제품 사진, 홍보물 이미지

사진저작물의 경우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 저작물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다44542 판결 등 참조). 갑 제5 내지 8, 12 내지 15호증, 을나 제2 내지 6, 12 내지 19, 28호증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제품 사진 및 홍보물 이미지에 위와 같은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드러나는 표현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 제품 사진 및 홍보물 이미지는 골프클럽의 헤드(페이스, 솔, 토우), 샤프트, 그립, 케이스를 각각 나누어 단일한 피사체를 촬영한 것이다. 골프클럽은 페이스, 솔, 토우, 리딩에지, 크라운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골프클럽의 광고사진은 위 각



부분을 중심으로 촬영하고, 구도 역시 각 부분의 형상과 특징을 잘 드러낼 수 있는 방법으로 촬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원고 제품 사진 및 홍보물 이미지에서 피사체의 선택과 구도의 설정에 창조적 개성을 인정하기 어렵다(특히 을나 제12호증 홍보물 제품 카탈로그의 이미지와 비교하면 피사체의 선정과 구도가 동일하다).

② 피고들이 제출한 타사 골프클럽의 광고 사진들과 비교할 때 원고 제품 사진 및 홍보물 이미지에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일반적인 골프클럽의 광고 사진과 마찬가지로 피사체인 골프클럽의 주요 구성부분의 형상과 재질의 특징을 충실하게 표현하여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촬영된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 제품 사진 및 홍보물 이미지가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촬영한 사진보다는 더 선명하고 명암대비도 뚜렷하게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특징 또한 타사 골프클럽의 홍보 사진에서도 마찬가지로 표현되고 있는 등 광고 사진에서 요구되는 일반적인 특징으로 보이고, 단지 제품의 차이로 인한 특성에서 구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불과해 보인다.

2) 원고 제품 설명문안

갑 제9 내지 11호증, 을나 제2 내지 5, 12 내지 19, 2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제품 설명문안에 저작물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는 표현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 제품 설명문안은 골프클럽의 제원(로프트 각, 라이 각, 프로그레션, 헤드 체적, 길이, 총 중량, 총 중량, 토크, 재질, 제법, 마무리, 도장 등)을 상세하게 기재한 것에 불과하다. 원고가 나열한 제원의 각 항목은 골프클럽 제품의 기능이나 재질, 구성, 명세, 특징 등을 설명하기 위해서 국내외 골프용품 관련 업체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일반적,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것들이고, 원고가 기재한 제원의 수치는 원고 제품의 실제 제원을 있는 그대로 표시하는 것이므로 누가 기재하더라도 동일할 수밖에 없다. 원고가 제원을 나열한 순서나 배열방식에 창조적 개성이 있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② 원고는, 원고 제품 설명문안에 '초저레진 얇은 카본 + 고강도 카본', '본체: 경비중 티탄', '솔: 텅스텐 합금', '페이스: DAT55G 티타늄', '본체 솔: 고밀도 정밀 주조', '페이스: 정밀 단조', '마감: 미러 광택 마감 + 더블골드 IP', '코팅: 래스터레드 + 레드브라운 그라데이션'과 같이 독특한 표현을 쓰고 있다고 주장하나, 위 표현은 제품의 소재(카본, 텅스텐 합금, DAT55G 티타늄), 제조방법(광택 마감), 색상(골드, 래스터레드, 레드브라운 그라데이션)에 관한 사실을 그대로 나타낸 것이거나 이를 강조하기 위해 '초저레진 얇은', '고강도', '경비중', '고밀도 정밀', '더블' 등의 일반적인 수식어를 단순히 추가한 것에 불과하다.

3) 원고 제품 요약문구(이미지 홍보물 요약문구)

갑 제12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제품 요약문구에 저작물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는 표현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가 창작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요약문구 중 'Fine Spider Web Face', 'Target Strike Technology', 'Flow Impact Shaft', 'Premium Head Cover', 'circle weight'라는 표현은 골프클럽의 형상, 성능, 품질의 우수성을 강조하기 위한 단어들을 단순히 나열한 것에 불과하므로 보호가치 있는 독창적인 표현형식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② 원고가 창작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요약문구 중 'TF-SPRING', '24K Gold I.P 샤프트', 'DAT55G 단조 티탄 페이스'라는 표현은 원고가 제조하여 판매하는 골프클럽 제품의 소재나 재질을 설명한 것에 불과하다.

③ 원고가 창작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요약문구 중 'I 특수한 정밀 페이스 설계로 반발 영역을 약 30% 확대하여, 임팩트시 페이스에서 최대의 볼 속도로 만드는데 도움이 됩니다', '겨냥한 지역에 탄도를 어시스트할 헤드 설계. 4D라운드 페이스와 트리플 허니를 보디 구조가 깊은 중심을 가능한 겨냥한 곳에 공을 날릴 수 있습니다', '자석이 있는 특수 설계된 헤드 커버', '유연한 굴곡이 규칙 상한 반발력을 낳는다', '잉여 중량을 솔 바퀴 부에 배치하고 직진성을 향상시킵니다', '감성을 자극하는 모델', '항공 우주 분야에서 개발된 PyroPhilite MR70을 사용'이라는 표현은 원고의 골프클럽 제품의 특징, 성능, 소재를 그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에 의하여 설명하거나 정리한 것에 불과하여 보호가치 있는 독창적인 표현형식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소결

원고 제품 사진 등은 창작성이 없어 저작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원고 제품 사진 등에 저작물성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설령 위와 같은 표현 중 일부에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원고는 자신이 제조하여 판매하는 골프클럽 제품의 해당 부분에 위와 같은 명칭을 부여하거나 해당 부분의 기능을 위와 같이 설명하여 광고함으로써 제3자에게도 타사 제품이 아닌 원고가 제조하여 판매한 위 골프클럽 제품에는 위와 같은 표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원고는 원고 홈페이지를 구성하는 개별 요소들을 분리하지 않고 홈페이지라는 단일한 저작물로서 메뉴 구성형식, 제품 이미지, 설명문안, 이미지 요약문구와 같은 소재의 선택이나 배열에 창작성이 있는 편집저작물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홈페이지에 위와 같은 창작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들이 원고 홈페이지의 전체로서 소재의 선택이나 배열을 모방하지 않은 이상 위 주장은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다.

4. 부정경쟁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 부정경쟁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들이 피고들의 홈페이지나 별지 목록 5 기재 각 인터넷 사이트에 원고 제품 사진 등과 동일·유사하거나 이를 번역한 피고들 제품 사진을 게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22 내지 26호증, 을가 제1호증, 을 나제7, 23 내지 25, 2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피고들 제품 사진을 게재함으로써 소비자들로 하여금 피고들의 영업을 원고의 정식 한국판매대리점의 영업으로 오인·혼동하게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위와 같은 원고 제품 사진 등은 원고가 제조하여 판매하는 골프클럽 제품의 외관, 제원과 기능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므로 위 골프클럽 제품에 대한 상품표지로서 기능한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그 자체로서 원고의 영업을 나타내는 표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또한 원고가 제조하여 판매하는 골프클럽 제품에 관하여 상품명 또는 제조사의 명칭에 주지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별개로 위와 같은 원고 제품 사진 등이 영업표지로서 주지성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② 병행수입 제품은 정식 국내대리점 판매 제품보다 가격이 낮은 장점이 있지만 제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사후처리에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비용이 추가로 부과되는 등의 단점을 가지고 있다. 상당수의 골프클럽 제품의 가격이 높기 때문에 골프클럽 판매업의 경우 조금이라도 저렴한 골프클럽 제품을 찾는 소비자들의 수요가 많아 병행수입 판매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골프클럽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은 정품과 병행수입 제품의 차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③ 골프클럽의 소비자들이 인터넷에서 골프클럽을 구매할 때에는 가격비교를 하고 구입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가격비교 기능을 제공하는 대표적 인터넷 사이트인 'K'에서는 원고의 골프클럽 제품을 검색할 경우 '공식 대리점 수입'과 '병행수입'을 구분하여 보여준다. K은 상품명에 병행상품임을 표시하지 않을 경우 K 검색 결과에서 해당 상품의 판매 링크를 삭제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④ 피고들은 피고들의 홈페이지, 인터넷 쇼핑몰의 상품 판매 상세 페이지의 본문 또는 상품정보제공고시 부분에 피고들이 판매하는 제품이 병행수입 제품임을 표시하였다. 또한 원고 제품 사진 등을 원고 제품의 판매를 위해 사용하였으나, 원고 제품 사진 등이 원고의 홈페이지에서 표현된 방식, 즉 사진과 문구의 배치, 배열까지 그대로



사용한 것은 아니다.

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 부정경쟁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1)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은 그 보호대상인 '성과 등'의 유형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유형물뿐만 아니라 무형물도 이에 포함되고, 종래 지식재산권법에 따라 보호받기 어려웠던 새로운 형태의 결과물도 포함될 수 있다. '성과 등'을 판단할 때에는 위와 같은 결과물이 갖게 된 명성이나 경제적 가치, 결과물에 화체된 고객흡인력, 해당 사업 분야에서 결과물이 차지하는 비중과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성과 등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인지는 권리자가 투입한 투자나 노력의 내용과 정도를 그 성과 등이 속한 산업분야의 관행이나 실태에 비추어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되,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침해된 경제적 이익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공공영역(public domain)에 속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파목이 정하는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권리자와 침해자가 경쟁관계에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경쟁관계에 놓일 가능성이 있는지, 권리자가 주장하는 성과 등이 포함된 산업분야의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의 내용과 그 내용이 공정한지, 위와 같은 성과 등이 침해자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의해 시장에서 대체될 수 있는지,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성과 등이 어느 정도 알려졌는지, 수요자나 거래자들의 혼동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6다276467 판결 참조).

2) 원고 제품 사진 및 홍보물 이미지에 관한 판단

원고 제품 사진 및 홍보물 이미지는 앞서 본 것처럼 저작권법에서 요구하는 창



작성은 인정되지 않지만 원고가 그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데 상당한 투자나 노력을 들였을 여지는 있어 보인다. 그러나 병행수입 제품의 판매 그 자체는 위법성이 없는 정당한 행위이고, 병행수입업자는 적극적으로 상표권자의 상표를 사용하여 광고·선전행위를 할 수 있는 점(대법원 2002. 9. 24. 선고 99다42322 판결 참조), 병행수입업자가 정당한 판매행위를 하면서 제품의 제조자가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 제품을 그대로 촬영하여 공개적으로 게시한 사진을 광고에 사용하더라도 그 사진 자체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이상 제조자의 이익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러한 사진 사용 행위가 국내 일반 수요자들에게 상품의 출처나 품질에 관하여 오인이나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고 오히려 소비자들에게 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데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이 원고 제품 사진 및 홍보물 이미지를 사용한 것이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3) 원고 제품 설명문안 및 요약문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것과 같이 ① 원고 제품 설명문안은 앞서 본 것과 같이 골프클럽의 제원을 상세하게 기재한 것으로서, 그 항목이 일반적,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것인 점, ② 원고 제품 설명문안에 기재된 제원의 수치는 누가 측정하여도 동일한 점, ③ 원고가 스스로 원고 제품을 원고 제품 설명문안으로 설명하여 제품의 특징을 그와 같은 문구로 명명한 점, ④ 원고 스스로 위와 같은 문구를 사용하여 자신이 제조한 제품의 특징을 홍보한 이상 제3자가 원고 제품의 특징을 그러한 문구로 부르거나 해당 부분의 기능을 그와 같이 설명하는 것은 원고의 의사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제품 설명문안 및 요약문구를 원고 제품을 정당하게 판매하는 사람이 그 제품의 특징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은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



다.

다. 소결

피고들이 원고 제품 사진 등과 동일·유사하거나 이를 번역한 피고들 제품 사진 등을 사용한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권오석

 판사 여태곤

 판사 김봉준